

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규정

2006. 6. 28 제정

- 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원칙) 단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 시 학생은 입학 당시의 소속을 유지한다.
- 제 3 조 (소속 변경)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은 1회에 한하여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조정되는 편제의 해당 전공(학과)으로의 소속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입학 당시의 소속으로 복귀할 수 없다.
- 제 4 조 (교과과정 이수) 전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 학생은 조정된 편제의 해당 전공(학과)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제 5 조 (전공 변경)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을 변경한 후에 다시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전공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소속되었던 학부에 개설되었던 전공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.
- 제 6 조 (재입학 및 복학) 폐지된 전공(학과)에 소속되었던 학생의 재입학 및 복학시 소속에 대하여는 교무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- 제 7 조 (운영세칙)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무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06. 6. 28 제정)

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